

의안번호	2200146
의 퇴 인	조승환의원
회 답 일	2024. 7. 1.
추계번호	24B0509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지원 및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억 2,400만원, 2030년 8억 2,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억 2,000만원(연평균 8억 4,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100	—	—	—	—	100	20
수출 지원 등(안 제12조)	600	600	600	600	600	3,000	600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안 제16조)	224	224	224	224	224	1,120	224
추가재정소요	924	824	824	824	824	4,220	844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실태조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보급된 수산기자재의 만족도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4	안 제6조(수산기자재 통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산기자재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수산기자재를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자(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그 수산기자재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수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11	안 제15조(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수산기자재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12	안 제16조(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한 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그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4항) 1. 수산기자재 인증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수산기자재를 지원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된 수산기자재의 우선구매 권고 3. 그 밖에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3	안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0조(사후관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의 수산기자재의 수리를 위해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1조(안전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6	안 제2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및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조성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7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재량규정 (수입감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법 제24조(조제목)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미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유사사례 참고												
2		—	- 미대상 - 시행계획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												
3	안 제5조(실태조사 등)	—	- 미대상 - 현재 실태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해양수산부)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td><td>285</td><td>200</td><td>200</td></tr> <tr> <td>- 수산기자재실태조사</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	285	200	200	- 수산기자재실태조사			
사업명	2022	2023	2024												
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	285	200	200												
- 수산기자재실태조사															
4	안 제6조(수산기자재 통합정보시스템)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수산기자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ISP 수립비용, 구축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ISP 수립 후 시스템 구축 규모 및 소요비용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해양수산부)												
5	안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수산기자재 관련 기관이 부재하고, 전담기관 선정 후 업무 지원 범위, 지원 내역 등을 구체화할 수 있어, 세부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해양수산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신기술 수산기자재가 부재하여 생산·구입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해양수산부)												
7	안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 신기술의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사업계획, 성과이전 대상 신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해양수산부)												
8	안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	- 미대상 - 현재 수산장비임대사업 시행중(해양수산부) -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활동 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용 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 임대지원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td><td>600</td><td>600</td><td>400</td></tr> <tr> <td>— 수산장비임대</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	600	600	400	— 수산장비임대			
사업명	2022	2023	2024												
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	600	600	400												
— 수산장비임대															
9	안 제12조(수출 지원 등)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0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수산기자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현재 수산기자재 전문기관이 부재하여, 세부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해양수산부)												
11	안 제15조(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	- 미대상 - 현재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사업('21~'26, 400억원)의 내역사업인 해양수산산업 표준화 기술개발사업(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추진중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td><td>3,365</td><td>2,980</td><td>396</td></tr> <tr> <td>—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표준화 기술개발</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3,365	2,980	396	—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명	2022	2023	2024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3,365	2,980	396												
—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표준화 기술개발															
12	안 제16조(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18조(인증 기관의 지정)	—	• 미대상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부산) 구축 후 인증센터에서 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증 수수료로 운영가능 ※ [참고자료 1]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 참고												
14	안 제20조(사후 관리 등)	—	• 미대상 － 현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통해 고장발생률이 높은 어업용기자재의 무상점검·수리 지원중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td><td>795</td><td>795</td><td>795</td></tr> <tr> <td>－이동수리소 운영</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	795	795	795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명	2022	2023	2024												
수산장비(임대)활용(3440-311)	795	795	795												
－이동수리소 운영															
15	안 제21조(안전 교육)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수산기자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재 수산기자재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해양수산부)												
16	안 제2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	• 미대상 － 현재 수행중인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및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자료 2]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및 [참고자료 1]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 참고												
17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수입감소) 현시점에서 공유재산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시설 및 부지의 사용료·대부료를 예측할 수 없고, 감경 규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에 따른 수입감소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유사계획 사례를 참고하여 1억원으로 가정하여 추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에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나라장터에서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연구용역 사례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 수산기자재 산업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	공고기관	공고연도	공고금액
환동해 스마트 수산기자재 특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2021	80
수산업 혁신을 위한 수산기자재 산업혁신기술개발 기획연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1	97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 1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	—	—	—	1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수출 지원 등(안 제12조)

- 수산기자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행사 개최 및 참가 등을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6억원으로 가정
 - 수출 지원: 매년 4억원
 - 컨설팅 매년 1억원
 - 국제수산물기자재 박람회 개최 매년 2억원
 - 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매년 1억원
 - 유관기관·단체 업무위탁 비용: 매년 2억원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원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기자재산업의 수출 지원 및 업무위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억원으로 추계됨

[표 4] 해외 수출 지원 등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출 지원 (컨설팅, 국제수산물기자재 박람회 개최, 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400	400	400	400	400	2,000
관련 기관·단체 업무위탁 비용	200	200	200	200	200	1,000
합계	600	600	600	600	600	3,0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안 제16조)

-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지원에 대한 비용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2억 2,400만원으로 가정
 -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을 수행중이며, 그 중 ‘국제인증취득지원’ 사업비는 22억 4,100만원 규모임(’24년 기준)
 - － 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경쟁력강화-국제인증취득지원
 - 해양수산부 의견에 따라 국제인증취득지원의 대상 업체 수(약 1만개) 대비 수산기자재 업체 수(약 1천개)를 고려하여 국제인증취득지원 사업비의 약 10%를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가정¹⁾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원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산기자재 인증 컨설팅 비용	224	224	224	224	224	1,12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수산물 가공업체(5,029개) 및 어업법인(5,746개)의 합계가 약 1만개이고 수산기자재 업체 수가 약 1천개(1,189개) 수준임(자료: 해양수산부)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

- **(목적)** 수산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을 통한 국산 수산 기자재 제품 경쟁력 제고, 신뢰성 확보 등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추진
- **(사업기간)** '23년 ~ '27년(5년)
- **(법적근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 **(사업비/시행주체)** 19,5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부산광역시
- **(예산)** '24년 1,000백만원
 - * 연차별 집행 실적 및 계획: ('23) 400백만원 → ('24) 2,000 → ('25~'27) 17,100

□ 추진 내용

- **(사업내용)** 수산기자재 업체 입주 및 집적, 수산기자재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표준화·인증 등에 필요한 성능·품질 성적서 인증 발행
- **(주요일정)** 사업 계획(안) 수립('23) → 기본계획 수립('24) → 총사업비 대상 사업 선정('24) → 기본·실시설계('24) → 설계 및 착공('25) → 완공('27)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7, 620-14번지 일원		
사업기간	2023년~2027년(5년)		
총사업비	237억원(국비 97, 시비 140)		
시행방식	재정투자		
시설유형	연구시설		
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부지면적	2,350m ²	용적률	120%
건축면적	1,410m ²	건폐율	60%
연면적	4,230m ²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참고자료 2]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기자재의 국산화,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촉진
- (사업기간) '23년 ~ '27년(5년)
- (법적근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 (사업비/시행주체) 42,5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전남(해남군)
- (예산) '24년 2,500백만원

* 연차별 집행 실적 및 계획: ('23) 2,000백만원 → ('24) 5,000 → ('25~'27) 35,500

□ 추진 내용

- (사업내용) 수산양식기자재 생산·유통, R&D 등이 연계되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식 분야 특화된 수산 기자재 신산업 육성 추진
- (주요일정) 사업 계획(안) 수립('23) → 기본계획 수립('24) → 총사업비 대상 사업 선정('24) → 기본·실시설계('24) → 설계 및 착공('25) → 완공('27)

<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감도 >

